

#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3) 축주가 환축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한 두 환**  
여강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김길동 수의사가 운영하는 '길동 동물병원'에 어느 날 이무전씨가 방문해서 강아지 멩멍이의 수술을 맡겼다. 김길동 수의사는 파텔라 수술을 한 후 일주일간 입원시키기로 하였고, 수술비는 100만원, 입원비는 일당 5만원씩으로 35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입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무전씨는 멩멍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김길동 수의사가 재촉하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찾으러 가겠다는 답변만을 하였다. 그 사이에도 멩멍이의 입원에 따른 관리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 김길동 수의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일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다. 이런 경우 김길동 수의사 입장에서는 이무전씨 때문에 현재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무전씨가 어떤 죄를 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초 받기로 한 금액 이외에도 추가로 입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이다. 무엇보다 당초의 진료비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1. 이무전씨는 죄가 있을까?

이런 경우, 보통 사기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무전씨가 처음부터 김길동 수의사를 속일 목적을 갖고 진료를 맡겼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행위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이무전씨는 멩멍이를 데려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무전씨가 아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기죄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할까?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는 속임수, 위력은 위협적인 힘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앞서 본 것처럼 이무전씨가 처음부터 김길동 수의사를 속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무전씨가 멩멍이의 진료를 맡겼더라도 그것만으로 김길동 수의사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역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2. 김길동 수의사는 당초보다 길어진 입원비도 받을 수 있을까?

김길동 수의사와 이무전씨는 멩멍이에 대한 진료에 대해 1주일짜리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위임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무전씨가 '나중에 멩멍이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하였다는 것은 위임계약, 곧 입원의 기

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더 연장된 위임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되어서, 이무전씨가 멍멍이를 데리러갈 때까지 입원을 계속시키겠다는 계약을 한 것이다. 따라서 김길동 수의사는 이무전씨에게 더 추가된 기간만큼의 입원비도 청구할 수 있다.

### 3. 김길동 수의사가 이무전씨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김길동 수의사가 이무전씨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소송은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싸다. 이런 경우 소송에 드는 비용이 청구하는 진료비를 훨씬 웃돌거나 소송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고 간편하면서도,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 바로 독촉 절차인데, 지급명령신청이 독촉절차에 해당한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독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채권자인 김길동 수의사는, 달리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와 이무전씨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법원은 김길동 수의사가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인 이무전씨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서류를 발송한다. 이무전씨가 서류를 받고 아무런 대응이 없거나 또는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라는 정도만 답변을 한다면, 김길동 수의사는 이무전씨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이무전씨가 서류를 받고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김길동 수의사의 선택에 따라 소송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지급명령 절차는 김길동 수의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에 비해서도 훨씬 저렴한 절차이다. 소송은 인지액도 비쌀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많은 선임비용이 드는 반면, 지급명령은 인지액도 10분의 1로 저렴하고 한 번의 서류제출로 마무리되므로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도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상대방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 이후부터는 연20%의 이자(정확한 용어는 '지연손해금')가 가산되므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이다.

### 4.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후엔 어떤 절차가 있나?

지급명령이 소송과 동일하게 취득하는 효력이란 무엇일까? 지급명령을 확정받는다라고 이무전씨가 저절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무전씨가 지급명령서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여전히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지급명령이 취득하는 효력이란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강제집행은, 김길동 수의사가 이무전씨의 재산이나 임금 등을 압류한 후 그것으로 진료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보통 진료비 정도의 채권인 경우는 부동산보다는 임금을 압류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을 압류하면 더 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비 등의 채권 때문에 부동산 압류와 경매를 감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므로, 압류만으로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 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민사적 절차로 부대 문제를 만들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필요 없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